

의안번호	2219279
의 퇴 인	박대출 의원
회 답 일	2026.6.17.
추계번호	26F28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 공공기관 법인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혜택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종전부동산이란 이전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청사 등의 부지 및 건축물 등을 말함
-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여 제출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승인
 -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대상 105개 이전 공공기관 중 기존 종전부동산을 보유한 기관은 총 67개이며 지방 이전 전에 수도권에 본사를 임차하여 정주한 기관은 총 38개
 - 종전부동산 매각액 및 평가액은 총 16조 8,281억원

1)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표 1] 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유형

(단위: 개, 억원)

이전 지역	기관수	본사 소유 기관		본사 임차 기관	
		기관수	종전부동산 매각액(평가액)	기관수	기존 임차료
합계	105	67	168,281	38	898.2
부산	11	5	3,795	6	346
대구	8	8	7,797	0	—
광주전남	13	12	114,651	1	0
울산	7	5	3,359	2	34
강원	9	7	5,908	2	0
충북	8	6	3,889	2	268
전북	5	4	6,278	1	0
경북	5	5	4,368	0	—
경남	10	6	9,850	4	29.7
제주	1	1	6,340	0	—
세종	19	6	1,931	13	86.5
개별	9	2	115	7	134

주: 1. 미매각 종전부동산 평가액 포함

2. 임차료가 0원인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 임차료 없이 무상으로 정주하였음

3. 임차료는 임대보증금, 관리비, 임차료 포함

자료: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6.4. (출처: 각 기관별 제출자료)

- 동 조세특례는 혁신도시·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종전부동산 양도 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는 특례를 제공하는 것임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은 2020년 0.7억원에서 2024년 0원으로 나타나는 등 일정하지 않음

[표 2]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 2020~2025년

(단위: 억원)

구분	세목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인세	0.7	0.1	1.0	0.1	0.0	0.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개정안에 따라 세수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을 새롭게 매각하여야 하나, 향후 매각 가능성이 낮아 단기적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제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은 기관들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 창출 등 미매각 사유가 존재

[표 3] 이전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미매각 현황

(단위: 천m², 억원)

기관명	기존	이전	면적		미매각금액 (공시지가)	미매각 사유
			부지	건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경남	38	72	오리 사옥: 5,801	오리 사옥 : 최초 매각공고('10년) 후 16차례 유찰되었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매각방안 추진 중
공무원연금공단	서울	제주	12	45	6,340	공무원연금기금 자산으로 기금운용 수익 창출에 활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	광주 전남	10	42	3,286	공단 종전부동산은 사립학교교직원 부담금으로 적립한 기금의 자산(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기금운용 수익 창출과 교직원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핵심 자산임에 따라 매각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공단	서울	전북	8	12	2,320	국민연금기금 자산으로 기금운용 수익 창출에 활용
신용보증기금	서울	대구	3	36	849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신용보증기금 사옥을 활용한 '마포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이 정부안으로 공식 결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종전부동산이 매각대상에서 제외
한국관광공사	서울	강원	2.8	26.6	1,649 (감정평가액)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2160(2015.04.03)호 의거 문화창조벤처 복합공간으로 운영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	울산	52	36	668	고용노동부에 기부채납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충북	60	12	1,005	매각부지 중 일부가 토지구제대상지역(개발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거허가구역,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되어 매각공고 후 42차례 유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경북	0.62	2.39	237	서울 중앙지부(대한법률구조공단)로 활용
합계					22,155	

자료: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6.4.
(출처: 각 기관별 제출자료)

□ 또한 2026년 6월 현재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등 구체적 법정계획이 수립되거나 발표된 바는 없어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국토교통부는 2026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한 바는 있으나²⁾, 구체적 계획은 미발표 상황임

2) KTV 대한뉴스,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주택공급 속도전(2025.12.12.)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743764)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